##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8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정춘생·김준형·서왕진

김선민 • 이해민 • 차규근

박은정 · 강경숙 · 김재원

황운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.

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 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음.

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·감독 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 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사무총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공무원"을 "공무원(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공무원의 임용) ① ~ ④	제3조(공무원의 임용) ① ~ ④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⑤ 사무총장은 직무상 필요하		
	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,		
	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		
	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		
	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		
	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		
	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의장에게		
	보고하여야 한다.		
제4조(사무총장) ① 사무총장은	제4조(사무총장) ①		
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			
무를 통할하고 소속 <u>공무원</u> 을	<u>공무원(국</u>		
지휘・감독한다.	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을 포		
	<u> 함한다)</u>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